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58호서식] <개정 2025. 12. 30.>

#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[ ] 사용종료 [ ] 폐쇄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30일(매립시설: 100일) |
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신고인 | 상호(명 칭 ) | 사업자등록번호 |
| | 성명(대표자) | 생년월일 |
| | 주소(사무실) (전화번호: ) | |

| 처리시설 소재지 | (전화번호: )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종류 | 규격 (능력) | 설치 승인·신고 또는 허가일 | 사용 개시일 | 사용종료(폐쇄) 예정일 | 매립시설인 경우 | | |
| | | | | | 승인·신고 또는 허가 면적(㎡) | 사용종료 면적(㎡) | 매립량(㎥) |
| | | | | | | | |
|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| | | | | | | |
| 신 고 사 유 | | | | | | | |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([ ] 사용종료, [ ]폐쇄)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## 시 · 도지사, 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첨부서류 | 1.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(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4조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)<br>가.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· 사용 내용<br>나. 사후관리 추진일정<br>다. 빗물배제계획<br>라. 침출수 관리계획(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)<br>마. 지하수 수질조사계획<br>바. 발생가스 관리계획(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)<br>사.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<br>2.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 · 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| 수수료<br>없음 |

**처리절차**

| 신고서 작성 | → | 접 수 | → | 검 토 | → | 결 재 | → | 신고 수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고인 | | | | 시·도지사, 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 | | | | |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